
Policy and Law Report _Vol.9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7.9 ~ 7.18) -

July 19,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이 제한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부속시설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감면 관련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개정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1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안) 심의·의결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폐쇄 또는 운영 제한되어 부속사업 임대료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 임차인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위한 조치 - 주무관청이 임대료 손실의 80% 수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20.11월)」 등을 감안하여 연간 2천만원 이내 - 이번 개정을 통해 100여개 사업의 사업자가 총 7~9억원 수준의 혜택 기대 ②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심의·의결 ③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심의 ④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심의 ⑤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심의·의결 - 내년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 계획 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황 점검 -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 * (디지털) 무선인터넷, VR MR,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등 (그린) 고효율 설비 자재를 이용한 탄소중립 학교, 체험중심 환경생태교육 확대 등	2021-07-09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하여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 추진 ②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고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 확대·개편 ③ 재정투입에 있어서도 '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의 190만개에 더하여 60만개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 ④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 ⑤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그린 뉴딜의 외연 확대 - 2030 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예정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⑥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 추진 -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 ⑦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 -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임 ⑧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음	2021-07-15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19회계연도부터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되었음.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 주요 내용으로는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행 초기 2~3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여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지원 * 개별·별도재무제표: 3년간 계도위주 운영 / 연결재무제표: 2년간 계도위주 운영 ②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 등이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 > [개별·별도 재무제표] <table><tr><th>자산 규모</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h>'21년</th><th>'22년</th><th>'23년</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h>'28년</th></tr><tr><td>2조원 이상</td><td>검토</td><td colspan="10">감사 의무화</td></tr><tr><td></td><td></td><td colspan="3">계도 위주</td><td colspan="7">본격 감리</td></tr></table> <table><tr><td>5천억원~2조원</td><td>검토</td><td colspan="10">감사 의무화</td></tr><tr><td></td><td></td><td colspan="3">계도 위주</td><td colspan="7">본격 감리</td></tr></table> <table><tr><td>1천억원~5천억원</td><td colspan="4">검토</td><td colspan="7">감사 의무화</td></tr><tr><td></td><td colspan="4"></td><td colspan="3">계도 위주</td><td colspan="4">본격 감리</td></tr></table> <table><tr><td>1천억원 미만</td><td colspan="5">검토</td><td colspan="6">감사 의무화</td></tr><tr><td></td><td colspan="5"></td><td colspan="3">계도 위주</td><td colspan="3">본격 감리</td></tr></table> [연결 재무제표] <table><tr><th>자산 규모</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h>'21년</th><th>'22년</th><th>'23년</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h>'28년</th></tr><tr><td>2조원 이상</td><td colspan="5">-</td><td colspan="6">감사 의무화*</td></tr><tr><td></td><td colspan="5"></td><td colspan="3">계도 위주</td><td colspan="3">본격 감리</td></tr></table> <table><tr><td>5천억원~2조원</td><td colspan="5">-</td><td colspan="6">감사 의무화*</td></tr><tr><td></td><td colspan="5"></td><td colspan="3">계도 위주</td><td colspan="3">본격 감리</td></tr></table> <table><tr><td>1천억원~5천억원</td><td colspan="5">-</td><td colspan="6">감사 의무화*</td></tr><tr><td></td><td colspan="5"></td><td colspan="3">계도 위주</td><td colspan="3">본격 감리</td></tr></table> <table><tr><td>1천억원 미만</td><td colspan="5">-</td><td colspan="6">감사 의무화*</td></tr><tr><td></td><td colspan="5"></td><td colspan="3">계도 위주</td><td colspan="3">본격 감리</td></tr></table> * 2021년 연말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	자산 규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조원 이상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2조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5천억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자산 규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조원 이상	-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2조원	-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5천억원	-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2021-07-12
	자산 규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조원 이상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2조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5천억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자산 규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조원 이상	-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2조원	-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5천억원	-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부처	내용	일시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금융위원회는 2021.4월 발표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를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및 금소법 시행 후 금융권 애로사항 수렴 결과, 일부 제도보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고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융상품판매업의 예외로 재보험사의 재보험계약 및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 집행을 위한 대출 추가 규정 ② 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로 법인 집단대출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을 규정 ③ 거래계좌 설정 등 기본 계약 체결 후 그 계약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 계약서류 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 ④ 현재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은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 있음	2021-07-12
조달청	• 2021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영상회의 개최 조달청은 「2021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펼쳐나가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고, 혁신조달 성과관리를 시범 도입 ②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위한 3개년 사업 본격 착수 ③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는 IT 서비스 상품 플랫폼 구축 ④ 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 및 공사비의 신뢰성 제고 등이 있음	2021-07-13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에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수출·투자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려는 것임	2021-07-13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기준을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매립시설인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를 구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각각 2킬로미터 이내, 300미터 이내인 경우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2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1-07-13
국토 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기술검토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 이에 따라 전담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및 지정취소 등으로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021-07-13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단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1.6월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을 위한 세부 내용 규정 (안 제29조의8 신설) ②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하여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투자계약 체결을 규정 (안 제29조의9 신설) ③ 첨단투자지구 변경 및 해제 등 (안 제29조의10 신설) ④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안 제29조의11 신설) ⑤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안 제29조의12 신설) ⑥ 첨단투자지구 부지 매입 (안 제29조의13 신설)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7/12(월)~8/2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유치과)로 제출	2021-07-12
국토 교통부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판매시설용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게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매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 공급 및 투지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익공유형 택지공급 적용대상 확대 (안 제13조의2제5항) ②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개선 (안 제13조의2제7항) ③ 협의양도인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안 제13조의3)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7/15(목)~8/25(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로 제출	2021-07-1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공유주방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함 (안 제21조제9호, 제2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②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화학 등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등으로 정함 (안 제27조의2 신설) ③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의 종류, 보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안 제29조의2 신설) ④ 공유주방 운영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등의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별표 2)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7/14(수)~8/2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로 제출	2021-07-1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금융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조정(1년 연기)하고,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14~8.23),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안 제11조) ②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기관투자자 위원 범위 명확화 (안 제12조) ③ 직권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의 추가 (안 제14조) ④ 주권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 마련 (안 제16조) ⑤ 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 공시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8조) ⑥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명확화 (안 제29조) ⑦ 업무의 위탁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4조) ⑧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 (안 부칙 제3조)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7/14(수)~8/2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기업회계팀)로 제출	2021-07-1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금융위원회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대표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기금 투자상품의 당일설정·환매 허용 (안 제77조, 제255조) - 연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위하여 MMF 또는 예금에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상품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②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개선 (제80조제1항)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으로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펀드와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50%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 ③ 자산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에 대한 특례 (제81조제3항)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공시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자산운용한도 위반시 해소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④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88조) - 성과보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허용 ⑤ K-OTC 진입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게재의무 완화 (제118조의16제3항) -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반기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바, 사업결산기 재무제표를 온라인소액투자증권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등이 있음 ⑥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제209조) -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 의무를 법령에 반영 ⑦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제209조) - 행정지도를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초과할 경우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령에 반영	2021-07-1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⑧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 (제217조, 제229조제2항) - 비활성화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동산·특별자산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증권형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 펀드 종류 등의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⑨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 (제80조, 제241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화로 납입·운용·환매가 이루어지는 외화 MMF를 도입하고, 외화MMF는 해당 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에 10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일통화로만 운용하도록 규정 ⑩ 종전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 (제243조제3항) -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종전형집합투자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전형집합투자증권을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⑪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등록 허용 (제304조) - 전문투자자용으로 이미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위임근거 마련 ※ 의견제시기간 : 7/16(금)~8/25(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로 추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밖에 할부수수료를 최고한도를 조정하고 타법상 용어변경을 반영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용어의 변경(안 제2조), ②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안 제2조의2 신설), ③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조정(안 제5조)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7/14(수)~8/2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로 제출	2021-07-14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기존 금융회사들 간에 규제의 격차가 발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으로 재정비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하는 한편,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하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금융회사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가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안 제2조제2호의6·제4호의5 신설, 제28조제2항제3호) -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②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 (안 제2조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신설, 제28조) -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 전자지급수단별로 세분화된 현행 7개의 전자금융업의 종류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함과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여 전자금융업을 총 4개로 재분류함 ③ 이용자에탁금수취업자에 대한 규제 차등화 (안 제2조제4호의6, 제3조의2 등 신설) - 자금이체업자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선불지급수단의 충전 형태로 이용자로부터 금전을 수취한 대금결제업자를 이용자에탁금수취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은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금융회사로 간주하며 이들과 거래하는 이용자는 금융소비자로 간주하여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④ 이용자에탁금의 보호 (안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3 등 신설) - 이용자에탁금수취업자가 수취한 이용자에탁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함.	2021-07-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예치된 이용자예탁금 또는 이용자예탁금 중 미예치된 금전을 내부거래에 활용하지 못하게 함 - 예치된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변제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가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용자예탁금을 예치받은 금융기관이 직접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파산참가기관이 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⑤ 디지털금융협회의 설치 (안 제4조의2 신설)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규제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유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디지털금융협회를 설치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은행 부총재가 공동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함 ⑥ 전자금융거래계약의 해지 및 환금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강화 (안 제16조) -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지체 없이 수취한 금전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 또는 예금을 반환하도록 함 ⑦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 명확화 (안 제41조)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의 유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전자금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⑧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 강화 (안 제42조의2 신설) -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 실적 등 경영 현황의 중요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⑨ 전자금융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명시 (안 제46조의3 신설 및 제49조) - 이용자예탁금을 외부에 예치하지 않은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과 벌칙을 부과함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u>」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구축한 망을 이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망 투자 및 확충 유인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망 구축에 지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인터넷망 이용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2020가합533643판결)을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며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망 이용을 통해 제공받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 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50조제1항제6호 신설)	2021-07-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보건복지 위원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4인)」 현행법상 식품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어, 특히 시각 장애인 소비자가 보호자 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고, 점자를 통해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세부 식품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함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식품·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의 식품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 제31조제3항 신설)	2021-07-15
환경노동 위원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0인)」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은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할 뿐만 아니라, 그 캡슐의 재질이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결국 인체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는 규제내용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음 이에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 등)	2021-07-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u>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0인)</u>」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 중유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만 과세하고 탄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함. 다만,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만 과세되고 있는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탄소세로 다른 화석연료에도 과세되게 됨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휘발유·경유의 과세되는 금액만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게 하고자 함 (안 부칙 제4조의2)	2021-07-12
국토교통 위원회	• 「<u>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7인)</u>」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한편, 최근 17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사고의 경우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 재하도급 관행이 드러나면서,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4 신설)	2021-07-14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7/23(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48호 발간	
국회도서관	7/2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6호 발간 -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	
미래연구원	7/22(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23호 발간 -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디지털 전환 분석 사례”	

[별첨1] 제389회국회(7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예결위	7/20(화) 14:00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21(수) 10:00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무위	7/20(화) 09:30	법안심사1소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20(화) 10:00	전체회의	법안 의결
과방위	7/20(화) 10:00	안전조정위원회	인앱결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
환노위	7/20(화) 10:00	환경법안심사소위	기후위기 대응법안 입법공청회, 법안심사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21(수) 10:00	경기도 공공버스 국회토론회 - 설 자리 잃어가는 버스의 해답!	강득구, 김경협, 김상희, 김영진 의원실 외	켄싱턴호텔 15층
7/22(목) 14:00	(베트남전쟁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간담회	이재정, 기동민, 이규민 의원실, 한베평화재단	이재정TV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13(화) 10:30	게임 섯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허은아 의원실	유튜브 생중계
7/14(수) 14:00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형 수돗물 생산체 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	윤준병 의원실	켄싱턴호텔 15층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